

지 회 규 약

· 광주·전남지회 규약 125



사 법 단 인 대 한 전 기 학 회

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

광주·전남지회 규약

제1조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 광주·전남지회(이하 “지회”라 칭함)라 칭한다.

제2조 지회는 대한전기학회(이하 “학회”라 칭함) 규칙 12조에 의거하여 설치한다.

제3조 지회는 학회 정관 및 규칙과 본 규약에 의하여 운영한다.

제4조 지회의 관할지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일원으로 하며, 지회 사무소는 관할지역 내에 둔다. [1997.11.08 개정]

제5조 지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전기에 관한 연구조사 및 논문 발표회
2. 기술 강연회의 개최
3. 현장 견학 및 시찰
4. 전 각호와 지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6조 본 규약의 변경은 지회총회의 결의를 거쳐 학회 승인을 요한다.

제7조 지회의 사업은 지회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제8조 지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지회장 1명

부지회장 5명 [2003.12.13 개정]

총무이사 1명

지회이사 약간 명

지회감사 2명

제9조 1. 지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단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[1997.11.08, 2011.12.02 개정]

2. 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 [1997.11.08 개정]

3. 부 지회장 및 지회 이사는 지회장이 위촉한다.

4. 지회 감사는 지회 총회에서 선출한다. [2000.12.02 개정]

5. 전 지회장은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.

6. 지회 이사의 결원 시에는 지회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이사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10조 1.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괄하며 지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2. 부 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장의 유고시 지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 지회에는 지회총회 및 지회 이사회를 둔다.

제12조 지회 정기총회는 연 1회 4분기에 개최한다. [1997.11.08, 2005.11.25 개정]

제13조 지회 이사회 또는 지회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요구일로부터 2주일 내에 임시 지회총회를 소집한다.

제14조 지회 총회는 지회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5조 지회 이사회는 지회장과 부지회장 및 지회 이사로 구성된다. 지회 이사회는 지회 사업 집행의 요강과 특별히 부여된 사항을 의결한다.

제16조 지회 이사회는 정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 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제17조 지회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

부 칙

1. 본 규약은 199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. [4조, 제5조의 1)항, 제9조의 1), 2)항, 제12조 1997년 11월 8일 개정]
2. 본 규약은 2000년 12월 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 [제9조 4)항 2000년 12월 2일 개정]
3. 본 규약은 2003년 12월 13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 [제8조 부지부장은 3명에서 5명으로 개정]
4. 본 규약은 2004년 12월 17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 [“지부”라는 명칭을 “지회”로, 제9조, 제 17조 개정]
5. 본 규약은 2005년 11월 25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 [제12조 “가을”을 “4분기”로 개정]
6. 본 규약은 2011년 12월 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 [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) 지회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단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]